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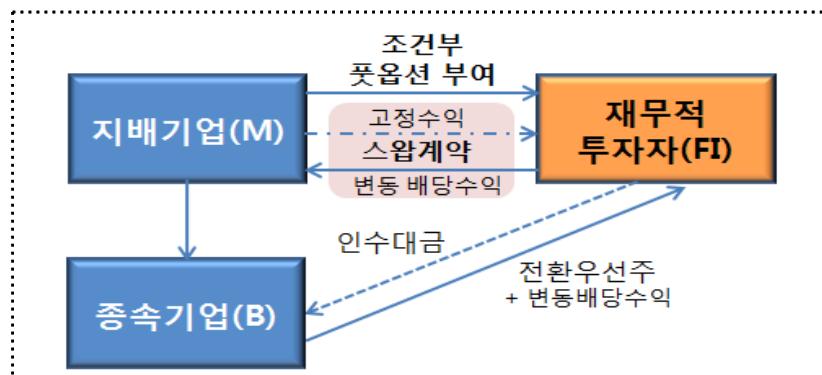
## 감리지적 사례 FSS/1912-15 :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 쟁점분야 :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01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7.9.30.

### 1.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M사의 비상장 종속기업 B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X6년말 B사는 운영 자금조달 목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300억원)를 실시하였다. 전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간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주당 전환가격은 주당 발행가액이다.

B사의 전환우선주 발행 구조



M사는 B사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FI가 보유한 전환우선주의 변동 배당수익을 수령하는 대신 FI에게 고정수익(연복리 7%)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주주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상기 스왑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FI가 보유한 B사 전환우선주를 M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였다. 풋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발행가액에 행사일까지 연복리 7%(보장수익률)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X6년말 B사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하였고, M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B사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 ① (별도재무제표) M사는 종속기업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인수자인 FI와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X6년 별도재무제표에서 파생상품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FI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FI에게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 누락함.

② (연결재무제표) M사는 종속기업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인수자인 FI에게 고정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동 전환우선주 중 일부는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금융부채(고정수익의 현재가치)에 해당함에도 이를 X6년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하였으며, 상기 조건부 풋옵션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 누락함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등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1)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며 (2)최초 계약시 순투자 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고 (3)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의미하며, 파생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여 최초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하여 M사가 FI와 체결한 스왑계약은 상기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최초 계약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18, 23, AG29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분류되어야 하며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기며 최초 인식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를 측정하여야 한다.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보면 FI에게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피 할 수 없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고정수익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비지배지분)이 아닌 금융부채로 계상했어야 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14에서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이 주석 사례로 예시되어 있다. M사의 경우 조건부 풋옵션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FI가 보유한 B사의 전환우선주를 M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M사는 적극적으로 계약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풋옵션의 행사를 회피할 수 있어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기에 주석으로 공시했어야 한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M사 감사인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비상장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주주간 계약 내용을 질문하거나 관련 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③ 감사인은 회계감사시 이사회의사록을 제시받았으며, 이중에는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한 의결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주주간 계약이란 체결문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감사인은 주주간 계약서 등 세부자료를 별도로 징구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 5. 시사점

복잡한 주주간 계약 등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종속기업과 연결실체간에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시 지배기업이 FI에게 약정을 제공한 경우, 전환우선주 발행은 종속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이지만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지배기업이 FI에 제공한 약정으로 인해 자본(비지배지분)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풋옵션 등 중요 약정사항은 주석 기재사항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건부 풋옵션 등 중요 약정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석 공시 대상이므로 관련 계약서 등을 적극적으로 징구하여 상세 약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복잡한 약정이 수반되는 유상증자의 경우 실질 파악을 위해 경영진에 대한 질문 및 관련 계약서 검토 등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분발행시 연결실체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나 복잡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안건에서는 상세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 등을 적극적으로 징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의 감사인이 다른 경우 지배기업의 감사인은 자본조달 주체가 종속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자체 자본조달이 어려운 비상장 종속기업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관련 감사 절차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유럽증권감독당국[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의 IFRS 집행사례  
→ 아래와 같이 주주간 약정 등을 통해 경제적 실질이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재무 제표에서 자본(비지배지분)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해석

- 비지배지분에 부여된 매도풋옵션의 회계처리(EECS/0407-16, 0209-06) : 지배기업이 비지배지분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 비지배지분에 대한 매도풋옵션 분류 및 평가(EECS/0809-05) : 비지배지분이 향후 지배기업의 자기지분으로 결제될 예정인 경우
- 금융상품의 분류(EECS/1208-09) :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더라도 지배기업이 매입해야 할 명백한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상품의 분류(EECS/1208-08) : 주주간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배당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누적적 배당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지배기업이 동 배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경우